# 부당이득금

[서울고등법원 2014. 10. 30. 2013나48540]



##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은)

【피고, 항소인】

【제1심판결】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8. 21. 선고 2011가합23386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4. 9. 4.

#### 【주문】

## 

- 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- (1) 피고는 원고에게 244,160,400원 및 이에 대한 2012. 5. 16.부터 2014. 10. 3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.
- (2)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총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제1항의 (1)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,160,400원 및 이에 대한 2004. 7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,160,400원 및 이에 대한 2004. 7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,160,400원 및 이에 대한 2004. 7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,160,400원 및 이에 대한 2004. 7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.

#### [이유]

】 1.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

가. 사안의 개요

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의 소득(5억 5,491만 원)을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고 이를 소득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받고,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가 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(합계 244,160,400원)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 환으로서 구상금 244,160,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,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전제된 사실관계

### [이유]

- 】 1.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
  - 가. 사안의 개요
-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의 소득(5억 5,491만 원)을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고 이를 소득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받고,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가 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(합계 244,160,400원)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 환으로서 구상금 244,160,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.
-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,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.
  - 나. 전제된 사실관계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